정보보호 정책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	구분	직위	성명	일자	서명
	승인	정보보호 최고책임자	홍길동	2019.08.16	
운영문서로서 검토되고 승인됨	검토	정보보호 담당자	장길산	2019.08.12	

# ㈜클라우드 정보보호 정책서

2019. 08. 12

㈜클라우드

담당자문서 제・개정 이력						
번호	날짜	쪽	내용	담당자		
1	2019-01-01	-	최초 작성	홍길동		
2	2019-04-06	2	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변경	장길산		
3	2019-07-01	10	망법 개정사항 반영 이용자 고지방법 변경	장길산		
4	2019-08-12	2	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변경	장길산		

# [목 차]

제1장 총칙	······1
제2장 정보보호 조직	1
제3장 인적 보안	1
제4장 정보자산 관리	2
제5장 서비스 공급망 관리	······3
제6장 침해사고 관리	3
제7장 서비스연속성 관리	4
제8장 준거성 관리	4
제9장 가상화 보안	4
제10장 접근통제	·····5
제11장 네트워크 보안	·····5
제12장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	6
제13장 시스템 개발 보안	6

본 문서는 정보보호 정책서에 대한 예시이며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형태,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정보보호 정책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적, 물리적, 기술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정의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정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클라우드컴퓨팅"(Cloud Computing)이란 집적·공유된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설비,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(이하 "정보통신자원"이라 한다)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.
- 2. "클라우드컴퓨팅기술"이란 가상화 기술, 분산처리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.
- 3. "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"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(商用)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정책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,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, 서면 등 모든 형태의 정보자산 및 정보자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적용된다.

# 제2장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

- 제4조(정보보호 정책) ① 클라우드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,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, 절차, 메뉴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 정보보호정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부터 제ㆍ개정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클라우드 정보보호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업무 관련자에게 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.
  - ④ 클라우드 정보보호정책 및 정책시행 문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, 관련 법규 변경 및 내·외부 보안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.
  - ⑤ 정보보호 정책 및 정책 시행문서의 이력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며, 최신본으로 유지하여 야 한다.
- 제5조(정보보호 조직) ①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 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를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,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
- ③ 실무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정보보호 실무조직은 정보보호 관리자, 정보보호 담당자, 개인정보보호 책임자(CPO),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⑤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의 주요 직무에 대하여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.
- ⑥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보호 관련 책임 및 역할은 이용자와의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(SLA)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인적 보안

- **제6조(내부인력 보안)**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계약 시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도록 비밀유지서약서를 부속 문서로 포함한다.
  - ② 클라우드 운영, 보안, 개발 등 유관 업무에 새로 합류한 인원(신규입사 및 전입)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서약서에 서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설비, 자원,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.
  - ③ 중요 정보자산(정보, 시스템 등)을 취급하는 직무를 정의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주요 직무자는 최소의 인원으로 지정한다.
  - ④ 주요 직무자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직무자별 부여된 권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  - ⑤ 직무의 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직무를 분리하고 직무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.
  - ⑥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외부인력 보안)**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보안요구사항(정보자산 접근 등)을 외주 용역(업무 위탁, 유지보수 직원 등)과의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③ 외부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퇴직, 인사이동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, 관련부서에 보고 및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산 반납, 계정 삭제 등 보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계약 만료 및 업무 종료 시 보안절차(자산 반납, 정보 파기, 계정 삭제 및 출입권한 삭제 등)를 수행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- 제8조(비밀유지서약서)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(외부인력 포함)은 정보보호

및 개인정보보호(해당되는 경우)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비밀유지서약서는 주기적(연 1회)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직무변경, 휴직, 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임시직원 혹은 외주 용역과 같은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, 변경 또는 해제 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, 조직 내 규정 준수, 정보보호 의무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 등이 명시된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- ⑤ 정보보호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는 법적 분쟁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정보보호 교육) ① 내부의 관련된 모든 임직원과 외부 업무 관련자(외주 용역)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, 훈련, 인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효과적인 교육 시행을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(집합교육, 온라인교육 등)을 정할 수 있다.
  - ③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정보보안의 날 지정, 뉴스레터 발송, 포스터 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  - ④ 개인정보관리책임자(CPO)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- ⑤ 클라우드 운영자 및 정보보호 직무자의 경우 기본 정보보호 교육 이외 클라우드 관련 보안교육을 별도로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⑥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, 조직 내·외부 보안사고 발생, 정보보호 관련 법률 변경 등 발생 시 정기 교육 외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⑦ 정보보호 교육, 훈련, 인식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<del>평가</del>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 제4장 정보자산 관리

- 제10조(자산 식별 및 분류) ① 정보자산(정보시스템, 정보보호시스템, 정보 또는 서비스)의 분류기 준을 수립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여야 한다.
  - ② 식별된 정보자산은 별도의 목록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정보자산 목록은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④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책임자 및 관리자(또는 담당자)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⑤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법적요구사항 및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

- 기준을 수립하고. 적절한 보안등급을 부여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정보자산의 취급절차를 보안등급에 따라 정의 및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자산 변경 관리) ①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 자산(시설, 장비, 소프트웨어 등)에 대한 변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 자산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사용된 자산(시설, 장비, 소프트웨어 등)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여 허가 받지 않은 변경을 탐지하고 최신의 변경 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④ 자산변경 후, 보안성 및 호환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위험관리) ① 다양한 측면(관리적, 물리적, 기술적 등)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여 문서화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위험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구성, 기간 대상,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위험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취약점 점검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④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및 조치결과를 문서화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5장 서비스 공급망 관리

- 제13조(공급망 관리 정책)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과 관련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범위 및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공급망 계약을 체결하고 다자간 협약시 책임을 개별 계약서에 각각 명시해야 하며, 해당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공급망 변경 관리) ① 정보보호 정책,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공급망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후 계약서 내용 변경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 공급망에 대한 보안위험을 재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서비스 수준 협약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주기적 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제6장 침해사고 관리

- 제15조(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체계) ①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, 긴급연락체계 구축,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, 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침해사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절차, 유출 금지 대상,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침해사고 대응절차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책임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④ 침해사고 정보를 수집·분석·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시스템 및 조직을 구성·운영하고, 침해사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보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- ⑤ 외부기관(외부 관제 업체 등)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⑥ 침해사고의 모니터링, 대응 및 처리와 관련되어 외부 전문가, 전문업체, 전문기관(KISA) 등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⑦ 침해사고 대응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훈련시켜야 하고, 주기적으로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침해사고 대응) ①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 내용, 원인,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처리와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**제17조(사후관리)** ①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② 침해사고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여야 한다.
  - ③ 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개선, 관련 보안교육 실시 등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.

#### 제7장 서비스연속성 관리

제18조(장애 대응) 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으로부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,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 시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 내용, 원인, 조치 현황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.
-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단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서비스 수준 협약(SLA)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하고 복구시켜야 한다.
- ④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한 서비스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, 필요한 경우 장애대응 절차도 변경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서비스 가용성)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능 및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,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또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보처리설비(예: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서버, 스토리지, 네트워크 장비, 통신 케이블, 접속 회선 등)의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설비를 이중화하고,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를 수행하도록 백업 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.

# 제8장 준거성 관리

- 제20조(법 및 정책 준수) ①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보보호 정책 및 서비스 수준 협약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준수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정보시스템 감사) ① 법적 요구사항 및 정보보호 정책 준수 여부를 보증하기 위해 독립적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② 보안감사 증적(로그)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 및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비인가 된 접근 및 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
#### 제9장 가상화 보안

- 제22조(가상화 인프라) ① 가상자원(가상 머신, 가상 스토리지, 가상 소프트웨어 등)의 생성, 변경, 회수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가상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또는 공개 서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 대책을 수립 및 주기적 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③ 이용자와의 계약 종료 시 자원 회수 절차에 따라 모든 가상 자원(백업 포함)을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  - ④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변경내역(수정, 이동, 삭제, 복사 등)에 대해 모니터링하

- 고,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가상자원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⑥ 가상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웹과 가상 소프트웨어(앱, 응용프로그램)를 배포하기 위한 공개서버에 대한 물리적, 기술적 보호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⑦ 표준화된 가상화 포멧, 이식성이 높은 가상화 플랫폼, 공개 API 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이식성을 높여야 한다.
- 제23조(가상환경) ① 바이러스, 웜,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환경(가상 PC, 가상서버, 가상 소프트웨어 등)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코드 탐지, 차단 등의 보안기술을 지원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이용자 통지하고 사용 중지 및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가상 환경(가상 PC, 가상서버, 가상 소프트웨어 등)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API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,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이용자가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전하도록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조치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출처,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가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.

# 제10장 접근통제

- 제24조(접근통제 정책) ①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영역 및 범위, 접근통제 규칙,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접근기록 대상을 정의하고 서비스 통제, 관리, 사고 발생 책임 추적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접근 권한 관리) ①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식적 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수립하고 업무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통제,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클라우드 시스템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, 이용(장기간 미사용), 변경(퇴직 및 휴직, 직무변경, 부서변경)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.

- 제26조(사용자 식별 및 인증) 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.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, 로그인 횟수 제한,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 전한 사용자 인증절차에 의해 통제하여야 한다.
  - ③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다중 요소(인증서 기반, OTP, 지문 등)로 강화된 인증수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법적 요구사항,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패스워드 복잡도 기준, 초기 패스워드 변경, 변경 주기 등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절차를 수립·이행하고 패스워드 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. 특히 관리자 패스워드는 별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⑤ 고객, 회원 등 외부 이용자가 접근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또는 웹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11장 네트워크 보안

- 제27조(네트워크 보안)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·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보안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DDoS, 비인가 접속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.
  -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관련된 내·외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(방화벽, IPS, IDS, VPN 등)을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④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중요정보가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과 이용자의 서비스 영역, 이용자 간 서비스 영역의 네트워크 접근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.
  - ⑥ 클라우드 시스템은 무선망과 분리하고 무선접속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무선접속 시 그 사유 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⑦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무선네트워크는 내부네트워크(업무망)와 분리 · 운영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장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

- 제28조(데이터 보호) ① 데이터 유형, 법적 요구사항, 민감도 및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이용자와 서비스 수준 협약 단계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한다.
  - ③ 입·출력, 전송 또는 데이터 교환 및 저장소의 데이터에 대해 항상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하여

야 하다.

- ④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, 위·변조 방지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.
- ⑤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,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 정보(이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 등)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종료, 이전 등에 따른 데이터 폐기 조치 시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폐기하여야 하며, 폐기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29조(매체 보호) ① 중요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매체(하드디스크, 스토리지 등)의 폐기 및 재사용 절차를 수립하고 매체에 기록된 중요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.
  - ② 자체적으로 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해 이력관리를 수행하고,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중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매체(외장하드, USB, CD 등)의 취급, 보관, 폐기, 재사용에 대한 절차를 수립·운영하여야 하며 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방치 대책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중요 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, 주요 제한구역 등에서 이동매체의 사용을 제한하고, 사용 시책임자의 허가절차를 거친 후 사용한다.
  - ⑤ 이동매체의 보유현황을 최신화하여 유지하고,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암호화) ①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대상, 암호 강도(복잡도), 키 관리, 암호 사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등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암호키 생성, 이용, 보관, 배포, 변경, 파기에 관한 안전한 절차를 수립하고, 암호키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13장 시스템 개발 보안

- 제31조(시스템 분석 및 설계) ① 신규 시스템 개발 및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, 최신 보안취약점,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 인증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정보의 입·출력 및 송·수신 과정에서 무결성, 기밀성이 요구될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③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사용자의 인증, 권한 변경, 중요정보 이용 및 유출 등에 대한 감사증

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④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시 업무의 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로그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인 자료로서 효력을 지니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 시각을 공식 표준시각으로 정확하게 동기화하여야 한다.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시각 정보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32조(구현 및 시험) ① 안전한 코딩방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구현하고,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도출한 보안요구사항이 정보시스템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. 단 분리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데이터 생성, 이용 및 관리, 파기,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④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 또한 소스 프로그램은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33조(외주 개발 보안) ①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을 외주 위탁하는 경우 분석 및 설계단계에서 구현 및 이관까지의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·감독하여야한다.
  - ② 외주 위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시스템 도입 보안) ① 신규 클라우드시스템 또는 보안시스템의 도입 시 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시스템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수 기준을 수립·운영하고 기준에 따른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장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

- 제35조(관리적 보호조치) ① 공공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보안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버·PC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호 제품 중에

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국내·외 C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장소 및 망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 시스템 운영 보안 수준에 준하여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공공기관의 사고·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, 대내·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, 공공기관의 사고·장애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36조(물리적 보호조치) ①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, 공공 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자원(서버, 네트워크, 보안장비 등), 출입통제, 운영인력 등은 일반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네트워크 스위치,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37조(기술적 보호조치)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중요자료를 암호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하여야 한다.

# 제15장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

- 제38조(개인정보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 수집□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
  -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39조(개인정보 처리제한) ①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③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40조(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) ①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및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.
  - ② 법령에 의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  - ③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#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정책의 이행) ① 회사의 정보보호 업무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다른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② 회사는 정보보호 정책 제·개정, 위험관리 및 내부감사 등 회사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,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정책의 검토) 본 정책의 적절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, 필요 시 개정안을 마련하며 제정, 개정 및 폐기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예외 적용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이라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.
  - 1. 기술 환경의 변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
  - 2. 기술적·관리적 필요에 따라 정책의 적용을 보류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
  - 3.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